

서울특별시 마포구 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13-48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3. 5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폐지이유

구청장이 시행자가 되어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주민들이 구획내에서 자력으로 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자력재개발 사업이 완료되었고 현재 진행중인 아현1-3구역은 사업방식을 자력에서 합동재개발 방식으로 전환 관리처분인가가 완료되었으며, 이 조례의 근거법률인 「도시재개발법」 및 「도시재개발법 시행령」이 폐지되고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등으로 통합되었으므로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주택재개발사업조례」를 존속시켜 운영 할 필요가 없기에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」를 폐지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

- 「도시재개발법」 및 「도시재개발법 시행령」 폐지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및 「동법 시행령」 제정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없음

다. 협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규제여부 : 해당사항 없음

4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(2013.4.18. ~ 2013.5.8.) 결과 : 제출의견 없음

나.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1부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